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38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u>제2항</u>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u>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		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		
라. <u>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라. <u>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		
마. <u>지하실(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마. <u>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신 설)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신 설)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60일
1. (생략)	1. (현행과 같음)			 60일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2.			 60일
제38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략)	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략)			 60일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